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

수신 직능단체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협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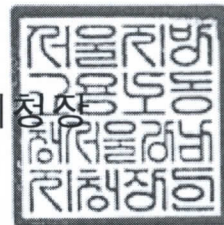
1.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(변경)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(2012.1.1. 시행, 벌칙 500만 원 이하 벌금) 하고 있음에도, 아직까지 일부 소규모 영세업체와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교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
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, 교부를 기초 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에는 시정지시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('14년 8월 시행)할 예정입니다.

3. 귀 단체 홍보관에 포스터, 스티커 부착 홍보와 아울러 소속 사업장 대상 각종 사업(설명회, 교육, 컨설팅 등)시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, 협회지(소식지) 보도 등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- 붙임: 1. 서면계약 포스터(스티커) 및 표준근로계약서 각 1부.
- 2. 서면계약 리플릿 1부. 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



팀장 변윤미 근로개선지도 전결 2014. 6. 17.
1과장 오학수

협조자

시행 근로개선지도1과-12137 (2014. 6. 17.) 접수

우 135-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(대치동 1024) 디마크빌딩 9 / <http://www.moel.go.kr/seoulgannam>
층

전화번호 02-3465-8424 팩스번호 02-6915-4311 / ifechome@moel.go.kr / 비공개(6)